##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8

발의연월일: 2020. 6. 11.

발 의 자:주호영·이종배·김희곤

류성걸 · 성일종 · 김용판

김태흠・구자근・이 용

김도읍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국민의 75%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죽음 이후에 상주가 문상객을 맞는 장례식장은 병원마다큰 공간을 차지하며 성업 중인 반면에 병원 내에서 가족과 함께 품위있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기에 적합한 공간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임.

환자가 가족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 인 임종실은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갖 추어야 할 시설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임.

이에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법률 제 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종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준수사항) (생 략)	제36조(준수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 &lt;신 설&gt;</u>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
	호에 따라 종합병원 및 요양병
	원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u>여야 한다.</u>